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12호

글렌데일 시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함

발급일: 2020년 7월 30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관 명령의 인가와 통합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지방자치법의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코로나19)에 대해 늘어나는 우려로 인해 불가피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결의안 20-28호를 채택하였다. 바이러스 증상은 열, 기침, 호흡곤란이고,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하는 여러가지 결말이 있게 된다. 짧은 기간에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가 사람 간에 쉽게 퍼진다고 알렸으며 대중은 가능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급하였다. 또한, 2020년 3월16일, 시의회는 특정 공공장소의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공중보건국은 전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9일, 재택대피령을 발령하였고, 추후에 여러번 수정되었으며 2020년 7월 18일에 가장 최근 수정안으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직장과 커뮤니티의 재개를 촉구하였다. (“카운티 명령”)

카운티 명령의 발령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관은 특정 지역의 활동을 늘리고 타지역에서 활동을 제한하는 다수의 수정안을 발령하였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수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와 카운티 조사결과와 일치하여, 글렌데일 시는 팬데믹의 급증에 대응하고 보고된 사례 숫자를 줄이고 글렌데일

시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수의 공중명령을 비슷하게 발령하였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상승곡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카운티 명령의 의도는 주민들이 실행가능한 주거지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실내와 실외장소에서 집 밖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대면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 팬데믹동안 전화근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렇게 계속하게 권하고, 개인가정이나 주거유닛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을 금지하며, 카운티 명령으로 분명히 허가받은 제한적 목적은 제외한다.

글렌데일 비상사태서비스국장의 공공명령의 의도(“공공명령”)은 다음과 같다.

- a. 필수활동, 정부서비스, 비지니스는 계속 할수 있게 하면서,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일치하여, 주거지에서 최대 사람수를 가능한 최대 수용인원으로 한다.
- b. 코로나19 확산을 상당히 늦춘다.
- c.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 질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줄인다
- d. 글렌데일 주민과 글렌데일에 위치한 사람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한다.
- e. 필수활동, 비지니스, 정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게 한다.
- f. 건강위험을 최소화하는 조건에 따라 실외취미활동을 허가하여 개인자유권을 보호한다.

카운티 명령으로 이에 정의된 허가받은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지만, 공공장소에 있을 때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를 항상 이행해야하고, 본인과 타인을 위해 일대일 대면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코와 입에 천얼굴가리개를 착용해야한다.

커뮤니티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고, 그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보건관은 카운티에서 사회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카운티 명령에서, 캘리포니아 정부법 26602항과 41601항과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01029항에 의거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보건관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국장이 카운티명령의 집행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카운티명령의 조항을 위반하면 공중보건에 즉각적 위험과 위협이 성립되고, 공중소란행위가 성립되고, 벌금, 수감형, 혹은 두가지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글렌데일 시법령의 2.84장에 의거한 공권력에 따라, 비상사태 서비스 국장은 다음 명령을 발령하고, 즉시 유효하며, 글렌데일 시의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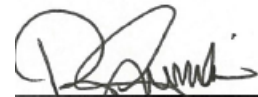
1항. 이 공공명령은 글렌데일 시에서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수에 근거를 두고 발령되었고, 지역 전체에서 카운티 명령을 집행할 추가적 방법을 시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관행으로 코로나19의 커뮤니티 확산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 사회적 모임을 직계 가족으로만 제한하기, 코와 입에 얼굴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이다. 글렌데일 시민의 상당부분의 나이와 건강으로 수천명의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등의 심각한 건강상 합병증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

2항. 모든 업소는 고객, 방문객, 직원들이 서로간에 가능한 6피트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모든 고객과 방문객은 직원과 고객을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코와 입에 얼굴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나 운영자는 이 명령으로 규정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매업체가 판매 시점에서 계산원과 고객을 분리하는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

3항. 카운티 명령의 위반은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반은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항의 규정으로 집행된다.

2020년 7월 30일

시간: 6:00 p.m.



루빅 고라니안
비상사태
서비스국장대행

양식에 대해 승인함:
마이클 J 가시아, 시검사
서명인: Michael J. Garcia
직분: 시검사
날짜: 2020년 7월 30일